

(앞면)

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 · 양수인가신청서			
※ 뒷면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			
양도인 (파는사람)	① 성 명		② 주민등록번호
	③ 주 소	(전화번호 :)	
	④ 사업면허 번 호		⑤ 면허일자
	⑥ 운전면허 번 호		
양수인 (사는사람)	⑦ 성 명		⑧ 주민등록번호
	⑨ 본 적		
	⑩ 주 소	(전화번호 :)	
	⑪ 택시운전 자격증번호		⑫ 발급관청
⑬ 차량번호			⑭ 양 도 가 격
⑮ 양도 · 양수사유		☐ 면허취득후 5년경과 ☐ 질병 ☐ 이민 ☐ 61세이상	
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			
년 월 일 양도인 (서명 또는 인) 양수인 (서명 또는 인)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귀하			
구 비 서 류	1. 양도자 가. 인감증명서 1통 나.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(원본) ※ 면허증분실자는 분실확인서약서, 개인택시취득시설확인원등으로 갈음 할 수 있습니다. 다. 택시운전자격증명 라. 기타 양도서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진단서 · 국외취업증빙서류 또 는 이민확인서등) 1부 2. 양수자 가.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각1부 나. 양도 · 양수계약서 사본 1부 다. 건강진단서 1통 라. 운전정밀검사종합판정표 1부 마. 차고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바.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사. 사진(2.5×3cm) 2매		

※ 신청안내

(뒷면)

신고하는 곳	특별시의 대중교통2과, 광역시의 교통지도과, 도의 교통행정과	처리기간	15일
수 수 료	3,000원		
유의사항			
○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·양수인가 대상(시행규칙 제15조제6항)			
1. 면허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			
2. 1년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			
3. 해외이민으로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			
4. 61세이상인 자로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			
5. 동일질병 또는 이에 기인하는 합병증으로 대리운전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최근 3년간 2년을 초과하는 경우			
○ 인가를 받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벌칙(법 제31조)			
위반차량 면허취소			
○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·양수시 양수인은 면허에 기인한 권리 의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양도자의 불법행위 사실유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.			